

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3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우리구의 자치법규를 제·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의 예외대상 중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삭제하여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3조 제2항 입법예고의 예외규정중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참여 기회를 차단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함.(안 제3조 2항)
- ▷ 제1호 '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' 를 삭제함.
- ▷ 제4호 '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' 를 삭제함.

3. 관계법령

- 행정절차법 제41조

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2항 제1호·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입법예고대상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</p>	<p>제4조(입법예고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제></u></p>